금융위원회고시 제2023-15호

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1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5조(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| 제5조(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|
| 장) ①·② (생 략) | 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|
| <u> <신 설></u> | 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|
| |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|
| |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혁신금 |
| | 융심사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|
| | 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|
| 제8조(안건의 비공개) ① 혁신금 | 제8조(안건의 비공개) ① |
| 융심사위원회의 안건의 내용이 | |
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| |
|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<u>1년</u> 의 | <u>3년</u> |
| 범위 안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 | |
| 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| |
|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기간이 경 | |
| 과한 후에도 비공개할 불가피한 | |
|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금융 | |
|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| |
|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| |
| 1. ~ 6. (생 략) | 1. ~ 6. (현행과 같음) |
| ②・③ (생 략) 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|